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강우신의원의외 6인

2. 발의 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4년 10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
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자함

4. 주요골자

○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조례
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삭제

5. 검토의견

○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
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은
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●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

전문개정 2000. 4. 8 조례 제2580호
개 정 2003. 5. 9 조례 제2751호
2004. 2. 13 조례 제279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의원의 의정자료수집, 연구비는 월 1,200,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300,000원으로 하며, 매월 충청북도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개정 2004. 2. 13)

제3조(회기수당)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1일 80,000원으로 한다. ②의원의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) ①회의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킬로미터 이상)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한다.
②제1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별표 1 "국내여비지급기준표"에 의한 교통운임(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). 숙박비 및 식비(3분의 1)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.
③제2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은 별표 3과 같다.

제5조(여비지급기준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,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)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②제1항에서 "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"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3. 5. 9 조례 제275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2년 1월 4일부

터,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4. 2. 13 조례 제279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